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2호
Apr. 2024

보험 판례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

1. 사안의 개요

-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중복보험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A(원고의 배우자),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여 실손의료보험계약 을 체결(이하 '본건 계약')
  - A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 甲 보험회사와 乙 보험회사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甲 보험회사의 보험을 '제2보험계약', 乙 보험회사의 보험을 '제1보험계약')에 가입,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
  - A는 군 복무 중이던 2017. 6. 22.경 소속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음
  - A는 甲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甲 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甲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중복보험자인 乙 보험회사가 2017. 7. 27. 甲 보험회사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甲 보험회사와 乙 보험회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 등(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른 것임
  - 이후 A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乙 보험회사는 A를 상대로 제1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은 제1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에 따라 乙 보험회사는 중복보험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액 중 乙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단지 피보험자의 손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시행규약을 정하였을 뿐이므로 A가 甲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하여 乙 보험회사가 A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乙 보험회사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656 판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약이 중복보험의 경우 업무 편의를 위해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부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맥락에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주관 보험자로서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타인 채무의 변제, 즉 다른 보험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므로 나중에 보험금 지급채무가 보험계약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주관 보험자 아닌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A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A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 종국적으로 그 손해를 부담한 乙 보험회사라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 상고심인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이하 '본건 판결')은 **'제1보험계약의 약관 제33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편입되었더라도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그 구상은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더러 위 약관을 분할 채무 부담 취지로 보더라도 甲 보험회사가 乙 보험회사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주요 설시이유는 아래와 같음A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 甲 보험회사와 乙 보험회사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계약(이하 甲 보험회사의 보험을 '제2보험계약', 乙 보험회사의 보험을 '제1보험계약')에 가입,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
  -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
  -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
  -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책임분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변제 목적 급부 후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이 되고, 그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i) A는 甲 보험회사에만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ii) A는 乙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바 없고 관련된 연락도 없었다는 점, (iii) 甲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은 乙 보험회사 부담 부분에 해당하고 甲 보험회사는 乙 보험회사를 대신해 지급한다고 A에게 표시하거나 A가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iv) 제1보험계약 약관 제33조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甲 보험회사가 乙 보험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v)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구상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보험자 간 분할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위 약관 제33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乙 보험회사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3. 시사점

- 중복보험자 중 일부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에게 구상한 뒤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였음
- 본건 판결은 피보험자가 중복보험자 중 보험자 1인에게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자가 그 자신의 결정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다른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사이에 보험금 지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